



[ 2018. 9. 28.] [ 29200 , 2018. 9. 28., ]

( ) 044 - 200 - 5712, 5711

( ) 044 - 200 - 5731

1 ( ) 「 」 .

2 ( ) 「 」 ( " " ) 2 7 " " .

3 ( ) 3 5 " " 2 .

3 2( ) 4 2 4 14 . < 2015. 7. 6.>

[ 2012. 11. 30.]

4 ( 가 ) 9 1 ( 4 1

) 가( " 가" ) 6 .

. < 2008. 2. 29., 2012. 11. 30., 2013. 3. 23.>

가

. < 2012. 11. 30.>

가

가

, 가

가

. < 2008. 2. 29., 2013. 3. 23.>

5 ( 가 ) 9 2 1 가 가 .

1. 4 2 가

2. 15 1 가

9 2 2

가 가

1. 4 2

2. 12 4 1 3 가

3. 15 1

4. 38

[ 2017. 9. 19.]

6 ( 가 ) 9 3 가 (

" " ) 1 7 10 .

. < 2008. 2. 29., 2012. 11. 30.,

2013. 3. 23., 2017. 9. 19.>

1.

2.

4

4

3. 「

」

2

1

2

,

.

< 2018. 9. 28.>

1

(解囑)

.

< 2018. 9. 28.>

1.

2.

3.

,

4.

.

< 2008. 2. 29., 2013. 3. 23.,

2018. 9. 28.>

[ 2012. 11. 30.]

7 (

가

)

9

4

가

.

< 2008. 2. 29., 2012. 11. 30., 2013. 3. 23., 2017. 9. 19.>

1. 가

가

2.

가

3.

4.

가

가

. .

< 2008. 2. 29., 2013. 3. 23.>

8 (

가

)

12

4

가

(

"

"

)

가

.

<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2017. 9. 19.>

1.

5

1

2

5

2.

<2015. 7. 6.>

3.

가

9 (

)

15

1

(

"

"

)

1

1.

2.

3.

(

,

)

[ 2018. 3. 20.]

10 (

)

15

1

.

,

.

< 2008. 2. 29., 2013. 3. 23., 2018. 3. 20.>

1

가

.

< 2008. 2. 29., 2013. 3. 23., 2018.

3. 20.>

1 2

.< 2008. 2. 29.,

2013. 3. 23.>

11 ( ) 15 1

가

2008. 2. 29., 2013. 3. 23.>

15 1

가

.< 2008. 2. 29., 2013. 3. 23., 2018. 3. 20.>

11 2( ) 15 2 2

1. (船齡) 15

2. 15 (車渡船)

3. 10

1

15

.< 2013. 3. 23.>

[ 2012. 11. 30.]

12 ( ) 16 1 2

.< 2008. 2. 29., 2013. 3. 23.>

1

.< 2008. 2. 29., 2013. 3. 23.>

1

12 2( ) 21 2

( " " )

1

4

10

(性別)

1. 「 」 58 2

2. 22 2

3. 「 」 60 1 2

4.

21 1

7

(開議)

1 5

[ 2015. 7. 6.]

12 3( ) 21 5 1

1 . < 2017. 9. 19.>

[ 2015. 7. 6.]

13 ( ) 24 7 "

. < 2017. 9. 19.>

24 8 " 가 "

.< 2010. 6. 28., 2017. 9.

19.>

1. 가 ( )

100 40

2. 1 가 100 40

3. 1 2 100

40

4. 가

2 "

1. 100 30

2. , , ( " " )

3. 1 2 「 」 777

4. 1 2 ( , , )

24 7 ( " " ) 1 11

.< 2010. 6. 28., 2017. 9. 19.>

.< 2010. 6. 28., 2013. 3. 23.>

1. 1

2. 「 」 2 1 「 .

」 8

3. 3 2

4. 1 3 , , 2

가

( 5 1 ) 2 .< 2010. 6. 28.>

.< 2010. 6. 28.>

.< 2010. 6. 28.>

1. 가

2. , 4 , 2 가

가

.< 2010. 6. 28.>

8 9  
2010. 6. 28.>

.<

2010. 6. 28.>

.<

14 ( )  
29 2

28 1 2  
28 5

29 5

. <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15 ( ) 29 6 "

(貨主團體)"

. <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1. 가
- 2.

100 25

29 6 가

.< 2017. 9. 19.>

- 1.
- 2.
- 3.
- 4.

16 <2016. 12. 5.>

16 2( ) 37 2 ( " "

- 1.
- 2.
- 3.
- 4.
- 5.

), 「 , . . , . ( .  
 」 4 , .

[ 2015. 7. 6.]

17 ( ) 38 1 ( )

. < 2015. 7. 6., 2018. 3. 20.>

1. 가 100 80
2. 100 20 100 80

3. 80

4. 39 1

5.

18 ( ) 38 1

. < 2008. 2. 29., 2013. 3. 23.>

1. ( )

2.

3.

1

1.

2.

38 1

. < 2008. 2. 29., 2013. 3. 23.>

19 ( ) 39 1

, . < 2008. 2. 29., 2013. 3. 23.>

19 2( ) 40 2 1 ( " " )

1. 「 」 4

2. 「 」 8

3. 「 」 32

4.

1 가

1.

2. 40 2 2 3 2

3. 40 2 2

1 2

[ 2017. 9. 19.]

20 ( ) 41 . < 2008. 2. 29., 2013. 3. 23.>

1.

2. 100 50 100 80 , 100 80

21 ( ) 41  
. < 2008. 2. 29., 2013. 3. 23.>

- 1. .
- 2.
- 3.

1  
1.  
2.  
41 18 3 .

21 2( ) 41 3 3

1 2 . < 2015. 7. 6., 2018. 3. 20.>

- [ 2012. 11. 30.]
- [ 2018. 3. 20.]

21 3( ) 41 3 4 「

」 2 9 「 」 2 4 「  
( " " ) 「 」 2 , ,  
( " " )  
41 3

. < 2018. 3. 20., 2018. 4. 30.>

- 1. 41 3 1 1 :
- 6 6
- 2. 41 3 1 2 :
- 1 1 . , 가
- 5 41 3 1

- [ 2017. 9. 19.]
- [ 21 3 21 4 <2017. 9. 19.>]

21 4( 가 ) 46 1

가

- 1. 가 100 30
- ( )
- 2. ( )가
- 100 30
- 3. 1 가 100
- 30
- 4. 2 가 100
- 30
- 1 " " 13 3 .

- [ 2013. 3. 18.]

[ 21 3 <2017. 9. 19.>]

22 ( ) 46 1 4 " "

- 1.
- 2.

46 1  
가·

, 가·

.< 2008. 2. 29., 2013. 3. 18., 2013. 3.

23.>

2

가

2

가

가

.< 2008. 2. 29., 2013. 3. 23.>

23 ( ) 46 2

- 1. 46 1 2 3
- 2.
- 3.

1

< 2008. 2. 29., 2013. 3. 23.>

1

.< 2008. 2. 29., 2013. 3. 23.>

23 2( ) 4 1

48 2 「 」 8 2

( " " )

1. 「 」 2 1

2. 1 「 」 2 4

, 1 1 4

1 「 」 8 3

( " " ) 10 1

100 10

[ 2017. 9. 19.]

[ 23 2 23 3 <2017. 9. 19.>]

23 3( ) 41 3 1

1



1. 49 2  
 2. 가  
 3.  
 2

1 3

[ 2015. 7. 6.]  
 [ 23 2 <2017. 9. 19.>]

24 ( ) 19 3 , 32 , 35 36  
 2 . < 2012. 11. 30.>  
 1  
 2 1 가 . < 2008. 2. 29., 2011. 4. 4., 2013. 3. 23.>

25 ( ) 24 . < 2008. 2. 29.,  
 2013. 3. 23.>

1 20

가 7 . < 2008. 2. 29., 2013. 3. 23.>

2

. < 2008. 2. 29., 2013. 3. 23.>

26 ( ) 25 1 가  
 7  
 10 . < 2008. 2. 29., 2013. 3. 23.>

27 ( ) 53 . < 2008. 2.  
 29., 2011. 10. 19., 2012. 11. 30., 2013. 3. 23., 2014. 11. 19., 2015. 1. 6., 2015. 7. 6., 2016. 12. 5., 2017.  
 9. 19., 2018. 9. 28.>

1. 4 ( )

2. 11 2

2 2. 11 2 2

3. 12 2 4 가

4. 13 2

5. 14 30

6. 15 , 16 1 2

7. 16 3

7 2. 17 5 ( 32 1 )

8. 18 ( 32 1 ) ,  
 가

9. 19 ( 32 1 ) ,
- 9 2. 21 1  
 가. 21 1  
 . 21 2  
 . 21 2  
 . 21 4  
 . 21 5 ,
- 9 3. 22 2  
 가. 22 5  
 . 22 5 1  
 . 22 5 2  
 . 22 5 3  
 . 22 5 4
- 9 4. 22 6 . .
10. 24  
 11. 25 2  
 12. 49 3 가  
 12 2. 49 2 .  
 13. 50 1 . 2  
 14. 51  
 15. 59 .
- 1 .< 2012. 11. 30.,  
 2013. 3. 23., 2015. 1. 6.>
1. : .  
 2. :  
 3. : ( )  
 4. :  
 53 , , .< 2008. 2. 29., 2011. 10. 19.,  
 2012. 11. 30., 2013. 3. 23., 2015. 1. 6., 2016. 12. 5., 2017. 9. 19.>
1. 33 35 . . , .  
 2. 34 가  
 2 2. 36 14  
 2 3. 36 17 5  
 3. 50 1 .  
 4. 51  
 5. 59 .
- <2014. 11. 19.>

<2013. 3. 23.>

[ 2017. 9. 19.]

27 2( ) ( 27 가 「 19 1 )

가 . < 2018. 3. 20.>

1. 4

2. 33 , ,

3. 41 2

[ 2017. 3. 27.]

28 ( ) 55 15

. < 2008. 2. 29., 2013. 3. 23.>

1 가

가

. <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가

. < 2008. 2. 29., 2013. 3. 23.>

28 2( ) 3

( 3 ) . <

2016. 12. 30.>

1. 3 : 2017 1 1

2. 13 2 가 : 2017 1 1

[ 2016. 12. 5.]

29 ( ) 59 1 3 3 . <

2012. 11. 30., 2015. 7. 6.>

[ 2011. 4. 4.]

< 20398 ,2007. 11. 30.>

1 ( ) .

2 ( ) 17414 2001 11 22

3 ( ) .

20 2 6 " 「 」 24 " " 「 」 22 " .

13 1 4 " 「 」 34 " " 「 」 33 " .

7 5 6 " 「 」 34 " " 「 」 33 "

104 7 1 2 " 「 」 25 " " 「 」 23 "

104 8 7 " 「 」 4 26 " " 「 」 4 24 "

229 1 1 " 「 」 26 " " 「 」 24 " , " 34

" " 33 " , 2 가 " 26 " "

24 "

52 2

「 」 39

, 39 2

< 20722 ,2008. 2. 29.> ( )

1 ( ) , 6

2 5

6 ( ) <135>

<136>

4 1 • 3 , 5 , 6 1 • 4 , 7 1

• 2 , 8 , 9 , 10 1 • 2 , 11 2 , 12 1

• 2 , 14 , 15 1 , 18 1 • 3 , 19 , 20 1 ,

21 1 , 22 2 • 4 , 23 2 • 3 , 24 2 , 25 1 • 2

• 3 , 26 , 27 1 • 2 • 3 ,

28 1 3 , 29 1 • 2 • 3 " " " "

6 1 " " " "

7 1 4 , 8 2 , 10 3 , 11 1 , 12 1 " " "

"

27 1 2 " " " "

<137> <138>

< 21626 ,2009. 7. 7.> ( )

< 22225 ,2010. 6. 28.>

< 22829 ,2011. 4. 4.> ( )

1 ( )

2 ( 「 」 ) 「 」 119 1 4

가

3 ( 「 」 가 ) 「

」 27 3

가

4 ( )

< 23233 ,2011. 10. 19.>

1 ( )

2 ( ) 27 1 2

가

< 24214 ,2012. 11. 30.>

2012 12 2

< 24410 ,2013. 3. 18.>

2013 3 19

< 24443 ,2013. 3. 23.> ( )

1 ( ) . < >

2 5

6 ( ) <144>

<145>

4 1 , 3 , 5 , 6 1 , 4 , 7  
 1 , 2 , 8 , 9 , 10 1 • 2 ,  
 11 2 , 11 2 2 , 12 1 • 2 , 13 5 , 14 , 15 1  
 , 18 1 , 3 , 19 , 20 1 , 21 1 ,  
 22 2 , 4 , 23 2 • 3 , 24 2 , 25 1 , 2 ,  
 3 , 26 , 27 1 , 2 1 , 3  
 , 4 , 28 1 3 28 2 " " "

6 1 13 5 1 " " " " .  
 7 1 4 , 8 2 , 10 3 , 11 1 , 12 1 1 2  
 " " " " .  
 13 5 " 2 " " " .  
 13 5 1 " " " " .  
 27 1 " ( 5  
 )" " " , 5 .

<146>

< 25759 ,2014. 11. 19.>

1 ( )

2 ( ) 27 4 , 27 1

< 25840 ,2014. 12. 9.> ( )

1 ( ) 2015 1 1

2 16

< 25985 ,2015. 1. 6.> ( )

1 ( )

2 3

4 ( ) ㉓

㉔

27 1 , 2 , 1 4

3 " " " " .

㉕ ㉗

5

< 26388 ,2015. 7. 6.>

1 ( ) 2015 7 7 . , 12 3, 1 3 2 .

2016 7 1 .

2 ( 가 ) 5 1 4

가 .

가 5 3

3 ( )

1 2 .

1 2 1 가 5 3

1 2 2 .

4 ( )

2 2 .

< 27658 ,2016. 12. 5.>

1 ( ) .

2 ( ) 가

27 1 가 27 1

가 , 27

3 가 27 3

< 27751 ,2016. 12. 30.> ( 가

)

1 ( ) 2017 1 1 . < >

2 12

< 27960 ,2017. 3. 27.> ( )  
2017 3 30 . < >

< 28335 ,2017. 9. 19.>  
2017 9 22 . , 3 2 2018 1 1

< 28713 ,2018. 3. 20.>

< 28845 ,2018. 4. 30.> ( )  
1 ( ) 2018 5 1 .  
2 3  
4 ( )

21 3 " (船舶給油業)" " "

< 29200 ,2018. 9. 28.>  
1 ( )  
2 ( )  
2



[별표 1] <개정 2016. 12. 5.>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2조의3 관련)

구분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미만인 경우
자격 기준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li> <li>「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만,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만을 관리한 경력은 제외한다.</li> <li>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법 제21조의5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li> </ol>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li> <li>「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li> <li>법 제21조의5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li> </ol>	<p>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5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선임 안전관리 책임자</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급 항해사, 4급 기관사</li> </ol>	<p>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5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p>	

		<p>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2.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3. 법 제21조의5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인원	수석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선임 안전관리책임자	<p>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이 6척 이하인 경우: 3척당 1명 이상</p> <p>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이 7척 이상 12척 이하인 경우: 4척당 1명 이상</p> <p>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이 13척 이상인 경우: 5척당 1명 이상</p>	

비고

1. 위 표의 경력에는 1년 이상의 승선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3. 위 표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척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비선은 제외하며, 주된 사업소와 영업소의 여객선은 모두 포함한다.

[별표 1의2] <개정 2018. 3. 20.>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1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항정지와 운항정지 또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와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운항정지명령의 경우 6개월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의 경우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 제41조의3제1항제1호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등록취소

나.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 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유류구매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등록취소
다.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법 제41조의3제1항제3호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등록취소
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등록취소
마.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 제41조의3제1항제5호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등록취소
바. 실제 주유받은 유종(油種)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 제41조의3제1항제6호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등록취소
사.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와 관련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법 제41조의3제1항제7호	1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2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2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4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3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지급정지	지급정지	지급정지
아. 법 제4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짓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1조의3제1항제8호	1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2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2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4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3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별표 2] <개정 2018. 9. 28.>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업종별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횟수(1차 위반,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으로 같다)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종별 과징금의 금액에 대하여율을 적용한다.

- 1) 1차 위반의 경우: 20%
- 2) 2차 위반의 경우: 50%
- 3) 3차 이상 위반의 경우: 100%

나. 가목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조항	업종별 과징금의 금액
---------	-------	-------------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 중 업
		내항 정기 여객	내항 부정 기 여객	외항 정기 여객	외항 부정 기 여객	순항 여객	복합 해상 여객	내항 화물	외항 정기 화물	외항 부정 기 화물	
가.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호, 법 제32조제1항										
1)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1,000	1,000	
2)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500	500	500	500	500	500	250	500	500	
3)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100	100	100	100	100	100	50	100	100	
4)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고		25	25	25	25	25	25	10	25	25	
나.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법 제19조제1항 제2호,	3	3	5	5	5	5	3	10	5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																		
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3호	3	3	5	5	5	5												
라.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4호	2	2	3	3	3	3												
마.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 제5호	10	10	10	10	10	10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3	3	3	3			
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임과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3	2	5	3	5	5			
아.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지 않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6호	2	1	5	3	3	3			
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2	1	5	3	3	3			
차.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3	2							



우 카.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7호	2	1								
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8호	3	2	5	5	5	5				
파.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10		10	10	10	10	10		10	
하. 법 제14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5조	3	2	5	5	5	5				2
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3	2	5	5	5	5				

너.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9호, 법 제32조제1항	2	1	5	3	3	3	2	5	3
더.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3	2	5	3	3	3			
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1호	10	10							
머.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받지 않고 여객선등을 운항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2호	20	20							
버.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운항관리규정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	법 제19조제1항 제13호	10	10							

<p>이 응하지 않은 경우                  서.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최대 정원을 초과하여 운항한 경우                  2)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화물의 적재한도를 초과하여 운항한 경우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항성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19조제1항 제14호</p>	<p>20</p>	<p>20</p>								
<p>어.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답변하는 경우</p>	<p>법 제19조제1항 제15호</p>	<p>5</p>	<p>5</p>								

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6호								
1) 출항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	50						
2) 감항성 관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0	10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	1						
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7호	5	5						
커.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8호	50	50						
터.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3	10	5

하지 않은 경우 퍼. 법 제26조제1항을 위 반하여 국내 지사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5	3
허. 법 제28조제1항을 위 반하여 운임을 공표 또 는 변경공표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20	
고. 법 제28조제2항을 위 반하여 운항계획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10	
노. 법 제29조제2항을 위 반하여 협약의 내용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20	10
도. 법 제29조제5항에 따 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20	10
로. 법 제30조에 따른 사 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2		10	5

모.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10		
보. 법 제31조제3항에 따 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5	
소. 법 제34조에 따른 영 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오. 법 제50조제1항을 위 반하여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법 제35조	2	2	3	3	3	3	2	5	3	2

[별표 3] <개정 2018. 9. 2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제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회 위반	2 회 위반	3회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3항 제1호	20	50	100
나. 법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2	20	50	100
다. 법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 제1호	100	250	500
라. 법 제12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3항 제1호	10	25	50
마.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법 제59조제3항	20	50	100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경우	제1호의3			
바.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제2호	100	250	500
사.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제3호	100	250	500
아. 법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제4호	100	250	500
자. 법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및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제5호	100	250	500
차. 법 제21조의3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4	20	50	100
카. 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적재한 경우	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5	50	70	100
타. 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적재 거부를 하지 않거나 발급·선적·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제6호	50	125	250
파. 법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 제1호	100	200	300
하. 법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6	10	10	10
거. 법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 제2호	50	125	250
너.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경우	법 제59조제3항 제2호	20	50	100
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3항 제3호	20	50	100
러.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59조제3항 제3호의2	20	50	100
머.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59조제3항 제4호	10	25	50



---

버.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9조제3항 제5호	20	50	100
---	---------------	----	----	-----